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29.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11일

나. 발 의 자: 우경란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8.)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의장의 책무(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안 제5조~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 본 조례안은

-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고 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과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범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 검토 결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등 상위 법령에 의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모두가 살기 좋은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
----------	-----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우경란, 최봉희 의원(2인)

찬 성 자: 유승용, 남완현 의원(2인)

## 1. 제안이유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조례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다. 의장의 책무(안 제4조)
- 라.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안 제5조~제6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

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